

인천지방법원 2021. 7. 7 선고 2021가단433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7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4. 3. 21. 접수 제324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4. 3. 20.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[별지]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봉지수

별지